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근거 공개 및 회의록 작성보존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104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내용	3
※ 참고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공개 자료(2023. 7. 19.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8
2.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12

I. 제안경위

2024년 6월 4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III.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의결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의사 일정,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출석위원의 발언, 표결 수 등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사를 속기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안 제17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생략)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여

③ ~ ⑤ (생략) <u><신설></u>	<u>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위원회 회의록) ① 위</u> <u>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u> <u>야 한다.</u> <u>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u> <u>일시</u> <u>2. 의사일정</u> <u>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u> <u>4. 출석위원의 발언</u> <u>5. 표결 수</u> <u>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u> <u>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u>사항</u> <u>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u> <u>록한다.</u> <u>③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보</u> <u>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u> <u>동부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의 경위와 주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예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장 이외의 위원은 회의 결과를 위원회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2015 .4. 24. ~ 2018. 5. 13.)에서는 회의 공개에 관하여 회의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차기 전원회의에 보고한 뒤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³⁾

이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장에서의 논의 요지와 의결사항 등을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회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⁵⁾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

1)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24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록에 서명하고,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경위와 주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결과의 발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 경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의장 이외의 위원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

3) 2015 .6 .18.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합의사항(회의공개 관련)

① 회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발언자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으로 명기

② 회의록은 차기 전원회의 때 보고하고 의결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

③ 회의 후엔 안건과 결정사항을 언론에 공개하고 개별적 공개는 금지 등

4) 【참고1】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공개 자료(2023. 7. 19.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참조

5)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는 15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위원의 모두발언 및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 회의록을 공개하되, 이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음.

고 있으며,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6)에 따라 ‘최저임금액(시간급, 월환산액)’,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기간 등을 고시하고 있으나,⁷⁾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산출 근거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최저임금안 산출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최근 7년간 최저임금안 산출근거 공개 현황 >

적용 년도	시간급 (결정일)	인상률	산출근거
2024	9,860 (7.19)	2.5	○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기준으로 표결<사용자위원안, 산출근거 미제시>
2023	9,620 (6.29)	5.0	○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기준으로 표결 - '22년 경제성장률 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22년 취업자증가율 2.2%
2022	9,160 (7.12)	5.05	○ 공익위원 제시안에 대하여 표결 - '21년 경제성장률 4.0% +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21년 취업자증가율 0.7%
2021	8,720 (7.14)	1.5	○ 공익위원 제시안에 대하여 표결 - '20년 경제성장률 0.1% +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0.4% +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
2020	8,590 (7.12)	2.87	○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기준으로 표결<사용자위원안, 산출근거 미제시> * 의결시 산출근거 미제시, 이후 사용자측은 언론에 '19년 물가상승률 전망 1.1% (한은, '19.4월)와 '20.1분기 경제성장률 1.7%(전년동기 대비)의 합이라 밝힘
2019	8,350 (7.14)	10.9	○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20년 임금인상률 전망 3.8%, KLI) + 소득분배 개선분(4.9%) + 협상배려분(1.2%) +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 <공익위원안>
2018	7,530 (7.15)	16.4	○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기준으로 표결<근로자위원안, 산출근거 미제시>

*자료: 고용노동부

6)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7) 【참고2】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참조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속기록 형태의 회의 기록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이 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참고로, 위원회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들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속기록 등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관련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 >

구분	회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등
영국	비공개	- 매월 개최하는 일반회의의 의사록은 기록되나 공개되지 않음 - 최저임금 권고안을 결정하는 최종회의는 외부인의 참석이 배제된 장소에게 개최되고, 기록도 남기지 않음. 단, 연보에서는 최저임금 권고안을 설명하고, 토론의 분위기 등을 기술할 수 있음
호주	비공개	-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및 최종 결정문 발표회 외에는 녹취나 속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음
독일	비공개	- 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회의 이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의결의 근거를 공개하는 것에 관하여 심의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가 제시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의 의결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산출 근거는 노측 또는 사측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의결근거 공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속기로 기록할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노·사·공익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유연한 논의를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⁸⁾ 현재 전원회의 결과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8) 다만, 동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의 작성·보존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 회의결과

- ❖ 일시: '23.7.19(수) 00:00 ~ 06:01
-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 참석위원: 위원 26명 중 26명
 - 근로자위원 8명(류기섭, 박희은, 정문주, 이정희, 김현중, 정용재, 곽현희, 김수정)
 - 사용자위원 9명(류기정, 이명로, 박복규, 김문식, 권순중, 하상우, 이오선, 금지선, 송유경)
 - 공익위원 9명(박준식, 하헌제,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강기룡, 고용노동부 김유진,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 의결사항('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 노·사는 제9차 수정안 제출 및 근거 설명

- | |
|---|
| <p>◆ 근로자위원 제9차 수정안: 시간급 10,020원('23년 대비 4.2% 인상)</p> <p>* 월 환산액 2,094,1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p> <p>- 제시 근거: '23년 임금총액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 예측치(4.2%) 고려</p> |
| <p>◆ 사용자위원 제9차 수정안: 시간급 9,830원('23년 대비 2.2% 인상)</p> <p>- 제시 근거: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보다 높게 제시</p> |

- 공익위원은 제9차 수정안 관련 판단 등 이후 회의 진행에 대하여 공익위원 내부 회의를 위한 정회 요청

* 정회(02:08~02:25)

- 속개 후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10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설명
- 근로자위원은 운영위원회(개회 직후 개회)에서 표결 가능한 수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요청한 제10차 수정안이 최종 제시안을 의미하는지 질의

-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9차 수정안 이후 제출되는 수준안으로 표결하겠다고 결정한 바 없으며, 수정안을 계속 요청하여 표결 가능한 안이라고 판단되면 표결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면서,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 정회(02:28~03:00)

○ 속개 후 노·사는 제10차 수정안 제출 및 근거 설명

◆ 근로자위원 제10차 수정안: 미제출

◆ 사용자위원 제10차 수정안: 시간급 9,840원('23년 대비 2.3% 인상)

- 제시 근거: 여력이 없는 상황 속에 심의 촉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수치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회 선언

* 정회(03:04~04:37)

○ 속개 후 위원장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설명

*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180원 차이, 제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시간급 9,920원('23년 대비 3.12% 인상)을 노·사에 조정안으로 제시

- 근로자위원(민주노총)은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사 최종안을 제출받아 표결에 부칠 것을 요청
- 공익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노·사가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조정안에 대해 使 측은 찬성, 勞 측은 경우 한국노총은 찬성, 민주노총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제9차 근로자위원 수정안 제출 시 민주노총은 미제출하고 한국노총만 제출하면서 전체 노동계 안으로 설명했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또한 동의로 본 것이라고 발언

- 근로자위원(민주노총)은 노동계 위원 구성이 한국노총·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각각 4명으로 과반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한국노총이 찬성했다고 하여 노동계의 합의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발언
- 공익위원은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발언
- 사용자위원은 노동계에서 조정안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했다며 노동계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합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현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00년대 초반 심의 당시 사용자위원(안)이 과반수가 아닌 안이 제시된 사례(1인의 안, 8인의 안)가 있다며, 과반수가 안전 성립의 조건이라는 근거를 모르겠다고 발언
- 근로자위원(민주노총)은 견해 차이로 복수의 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공익위원 조정안의 경우 한국노총 제시안이 아니고, 노동계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보려면 통상적으로 과반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 운영 원칙이라며 동의가 없었던 안에 대한 표결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
- 근로자위원(한국노총)은 과반수가 되지 않기에 노동계 대표 의견이 아니라고 발언

*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해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안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의 강한 반발로 표결하지 못하고 정회(05:00~05:14)

- 속개 후 위원장은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노·사 최종제시안을 요청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회 선언

* 정회(05:15~05:50)

- 속개 후 위원장은 노·사 최종안으로 표결하기로 하였다는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설명
- 노·사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으로 표결한 결과,
 -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 노·사 최종제시안

◆ 근로자위원(안): 시간급 10,000원('23년 대비 3.95%)

◆ 사용자위원(안): 시간급 9,860원('23년 대비 2.5% 인상)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